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3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3월 1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9. 3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확대와 같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정비
 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프로그램 수강생 증대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(안 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 - 안 별표2 단서 조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별표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
 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2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3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확대와 같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정비

-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프로그램 수강생 증대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도모(안 별표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9. 2. 14. ~ 3. 6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	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	
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	

※ 위 감면기준 외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 면 대 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</td> <td row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액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</td> </tr> <tr> <td>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신 설></p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	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	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	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10조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 면 대 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</td> <td rowspan="7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액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</td> </tr> <tr> <td>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위 감면기준 외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	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	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																		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																					
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																					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	전액면제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																			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																					
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한 소년·소녀가장																					